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6-22

대 구 고 등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 2015누547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
원고, 피항소인 [redacted]보증공사 (변경 전 상호 : [redacted]보증 주식회사)

피고, 항소인 [redacted]시장

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5. 5. 27. 선고 2015구합20390 판결

변 론 종 결 2015. 10. 2.

판 결 선 고 2015. 10. 23.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 : 피고가 2014. 11. 21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,631,850원, 농어촌특별세 87,300원, 지방교육세 163,1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

2. 항소취지 :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6-22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제1심 판결 제4쪽 첫째 줄의 "일이"를 "을이"로 고친다.

○ 제1심 판결 제9쪽 다섯째 줄의 "지방세법"을 "구 지방세법"으로 고친다.

○ 제1심 판결 별지 '관계법령' 중 제12쪽 스물다섯째 줄의 "■ 주택법"을 "■ 구 주택법(2015. 1. 6. 법률 제12989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)"으로, 제13쪽 첫째 줄의 "■ 주택법 시행령"을 "■ 구 주택법 시행령(2015. 6. 30. 대통령령 제26369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)"으로 각 고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사공영진

판사 장 래 아

판사 정 한 근